

기획조사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2006년 7월 1일 발효 예정, 신규 투자법 및 시행령(안) 기준 -



요 약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 시 내국 투자자와 별도로 적용 하던 외국 투자법의 차별조항을 WTO가입과 연계하여 폐지하기 위해 마련한 新투자법은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 투자법으로 2006년 7월 1일 발효 예정이다.

베트남 新투자법은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형식, 투자분야·투자지역·투자우대 및 지원, 직접투자 활동, 해외투자,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등 총 10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투자여건에 대한 큰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고 있다. 新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법 시행령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초안이 확정단계로 수상실 승인을 거쳐 7월 1일 전후로 시행될 전망이다.

새로운 투자법의 특징은 내외국 기업간 차별을 없앴으며 과거 금지했던 유통업 및 무역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과거보다 투자 업종면에서 외국기업들에게 시장을 보다 많이 개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6년 7월 1일 이후로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거나 이미 베트남에 투자진출 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동 신규 투자법과 시행령을 적용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I. 도입 /1

II. 베트남 新투자법 개요 /2

III. 新투자법의 상세내용 /8

1. 투자유형 및 진출기업 형태 /8

2. 투자가의 권리 /20

3.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지역 /25

4. 투자인센티브 내용 및 우대조건 /35

5. 투자등록절차, 신청서류, 심사기준 /46

6. 투자프로젝트 수정절차 및 방법 /65

7.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법 시행 후 기업 재등록 절차 /80

I. 도입

- ☐ 베트남 정부는 2006년 7월 1일부로 신규 투자법과 시행령을 실효할 예정임을 발표함.
- ☐ 현재 베트남 투자법은 확정되었으나 투자법 시행령은 시행(안)이 조정 과정 중에 있으며 조만간 수상실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¹⁾
- ☐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해당 신규 투자법(확정분)과 투자법 시행령(안)에 의거하여 베트남 투자 진출 시 필요한 정보의 핵심을 요약하여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신속히 해당 신규 법을 숙지하여 변화하는 베트남 투자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²⁾

1) 본 보고서에서 소개된 시행령(안)의 내용은 향후 확정된 시행령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투자법과 시행령의 모든 내용은 향후 발간될 「베트남 투자 관련 법령집」을 통해 소개될 예정임.

II. 베트남 新투자법 개요

- 베트남 新투자법은 과거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 시, 내국 투자자와 별도로 적용하던 외국인 투자법의 차별조항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것임.
- 내외국인에 공통 적용되는 통합된 투자법으로서 2005년 11월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06년 7월1월부로 발효될 예정임.
- 과거의 투자법이 내국인에게는 매우 관대한 반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와 모호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내·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음.
- 그러나 베트남이 WTO 가입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통합 투자법 마련이 필요했음.
- 금번 베트남 신 투자법은 총 10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음.
 - 1장 : 총칙
 - 2장 : 투자보장
 - 3장 :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 4장 : 투자형식
 - 5장 : 투자분야, 투자지역, 투자우대 및 지원

○ 6장 : 직접투자활동

○ 7장 :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

○ 8장 : 해외투자

○ 9장 :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 10장 : 부칙

□ 신규 투자법은 큰 테두리만 정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법 시행령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초안이 확정단계로 수상실 승인 및 다소 내용 수정을 거쳐 7월 1일 혹은 그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 새로운 투자법의 특징은 내외국 기업간 차별을 없앴으며 과거 금지되었던 유통업 및 무역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과거보다 투자 업종 면에서 외국기업들에게 시장 개방을 보다 많이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과거의 투자법이 구체적 내용의 결여로 시행령이나 공무원의 해석에 의존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2006년 7월 1일 이후로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거나 이미 베트남에 투자진출 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신규 투자법과 동 시행령을 적용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신규 투자법과 과거 투자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 유형	직접투자	- 기존의 투자법에서 명시하였던 투자유형을 다양화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였음. - 또한 생산능력향상, 신규 기술 도입, 품질 향상, 환경오염 방지 능력도 직접투자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투자유형이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BCC, BOT, BTO, BT 등에 불과함.
	간접투자	- 재정지원, 회사 지분 취득(일부 민감 품목 분야는 외국인 지분 보유가 제한되어 있음), 기업 합병 및 인수, 주식 및 채권 취득, 투자펀드 취득, 기타 재무 참여 등 간접 투자를 허용함.	간접투자 개념이 없음.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 투자법
투자 절차	투자 등록	- 투자등록을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이 3,000억 VND (1,900만불) 이하이고 조건부 투자대상 분야가 아닐 경우 투자 신청 후 15일 이내 투자 라이선스 획득이 가능함.	투자 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으며 등록 소요기간은 30일임.
	등록 소요기간	- 1,900만불 이하 및 조건부 투자대상 이외 분야의 소요기간은 15 일 이내임.	금액명시가 없었으며, 소요기간은 30일임.
	투자심사	- 투자금액이 3,000억 VND(1,900만불)이상 이거나 조건부 투자 대상 분야의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신청 후 최소 30일, 최대 45일 안에 투자승인을 획득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	투자금액별 등록처가 명시되지 않으며 투자 심사 소요기간은 45일임.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투자법
투자 인센 티브	세금우대조항	- 우대 세율 명시 없음.	- 법인세 우대 세율을 (28%,20%,15%,10%)로 구분 하였음.
	소득세 면제	- 투자자는 자본참여에 의한 소득, 주식 취득 후 배당금 소득(회사가 소득세 납부완 료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 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명시 함. - 투자 장려분야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 소득세 면제를 함.	- 자본참여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조항이 없었음.
	수입관세면제	-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원부자재, 차량 등 교통 장비, 기타제품 구입 시 수입관세를 면제함.	- 투자 시 고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만 면제하고 있음.
	토지사용기간	- 토지사용 기간을 50년으로 제한하고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70년으로 제한 하고 있음.	- 토지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음.
	토지사용료	- 투자 장려분야 투자 시, 토지 무상사용, 토지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명시함. (투자형태 보다는 투자분야 중시)	- BOT, BTO, BO 형태 투자나 열약지역 투자 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함.
	기타 인센티브	- 공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술단지, 가공단지, 전통 공예단지 등 투자 시 정부로 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	- 공업단지, 가공단지 투자 시 우대가능만 명시함.

구분		신규 투자법	과거투자법
투자자 권리	원자재, 장비구매	- 국내제품 우선 구매 및 국내 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함. (의무조항 해제)	- 투자자가 장비, 차량, 원부자재 구매 시, 베트남 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명시함.
	투자자금 회수	- 투자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 감액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함.	- 외국투자자는 투입자금을 제3자에게 매각할 권한만 있다고 명시함.
투자 보장	투자자산 유상 보상	-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경우 시장가격으로 보상한다고 명시함. - 보상 수단은 환전 가능한 통화이며 자유로운 해외 송금을 보장함.	- 투자자산을 베트남 정부가 접수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가격 및 보상수단에 대한 명시가 없었음.
투자 분야 및 이중 가격	무역, 유통업 분야 투자	- 외국투자자가 무역 및 유통업에 투자하는 것과 100% 단독투자가 가능함. - 취급 업종분야 및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음. - 그러나 동 분야는 자동 승인 대상 분야가 아닌 투자심사 대상 분야로 향후 세부 지침 및 보완이 예상됨.	- 무역, 유통업에 대한 투자가 법으로 명시되지 않고 행정규제 사항으로 투자를 사실상 불허함. - 특별히 승인할 경우도 합작 투자만 허용함. - 투자허가 시에도 타 업종 및 취급품목 확대가 불가능하게 함.
	이중 가격 적용	- 외국 투자자도 내국기업과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 수도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가격을 폐지함.	- 외국 투자기업에게 베트남 국내기업보다 높은 전력 요금 및 수도요금 등 이중 가격을 적용함.
투자 청산	투자 청산 시 조건	- 투자승인시한 종료, 투자자 부도와 함께 투자자 자의로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명시함.	- 투자승인시한 종료나 투자자 부도시 정부가 투자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만 명시함.

III. 新투자법의 상세내용

1. 투자유형 및 진출기업 형태

☐ 투자법 적용 대상

-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활동은 투자법의 적용을 받음.
-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을 적용함.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함.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관습에 의거하여 적용함.
- 우선순위 : 국제조약>특별법>투자법

□ 투자 방식 구분 (투자법 시행령 제 5조)

구분	내용	비고
직접 투자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단독 자본출자 -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간 합작 - BCC, BOT, BTO, BT 계약에 의한 투자 - 경영협력투자 - 지분매입 혹은 자본출자를 통한 투자활동 관리 및 참여 -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 - 기타 각종 형태의 직접투자	투자법 제 21조
경제단체 및 회사 설립에 의한 투자	- 투자법 제 21조에 근거한 투자형태 * 기업 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 단체 *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각종 수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각종 경제 단체들 - 국내투자자의 경우 상기 형태 외에 조합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조합 또는 조합 연합의 설립을 위한 투자 등	투자법 제 22조

구분	내용	비고
상호 계약에 의한 투자	- BCC 계약 또는 경영협력 형식의 계약체결에 의한 투자 * 이윤, 생산품 분배 목적의 생산 협력 * 유전 탐사, 조사, 개발 및 자원 생산 및 분배 형식의 계약 * 교통, 전력생산과 경영, 배수 시설, 폐수처리 시설, 기반시설 신축 및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 등	투자법 제 23조
사업개발투자	- 사업장의 확대, 매출규모 및 사업 규모의 증대 - 기술혁신, 품질 개선, 환경오염 축소 등	
자본출자, 지분매입, 인수, 합병 형태의 투자	-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대한 자본출자 및 자본 매입 - 기업 및 지사의 인수 및 합병	
간접 투자	- 지분의 매입, 주식 매입,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한 투자 - 증권 투자기금을 통한 투자 - 금융 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한 투자	투자법 제 26조

□ 사안별 투자 추진방법 (투자법 시행령 제 6조)

구 분	내용	비고
최초로 기업을 설립하여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국내 투자가	- 기업법에 의거, 먼저 사업자 등록을 시행한 후 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등록 또는 허가를 받음.	투자법 시행령 제 6조
베트남에 최초 투자하는 외국투자가	- 투자법에 의거하여 투자절차를 밟은 후 투자 승인 확인서 (Certificate of Investment)를 발급 받음. - 이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가 기업법상 사업자 등록증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을 대체함.	투자법 시행령 제 6조
이미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투자가	- 새로운 투자주체(기업)의 설립 없이 신규 투자프로젝트를 추진 시, 본 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절차를 밟아야함. - 새로운 투자주체 설립이 수반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 승인 확인서(Certificate of Investment)를 발급받아 경제주체를 설립해야 하며 현재는 투자승인 확인서가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을 대체함.	투자법 시행령 제 6조

□ 투자 형태별 회사설립 개요(투자법 시행령 제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구분	내용	비고
100% 투자 회사	- 국내 또는 외국투자가는 100% 지분 소유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수행을 위해 다음 형태로 경제주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함.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 합작회사(Partnership Company) *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 * 기타 투자법이 정하는 다른 형태의 투자형태 - 베트남에 기 설립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동일 외국기업 또는 외국투자가와 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동 투자기업은 베트남 법에 의해 법적 주체성을 갖고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즉시 활동이 가능함.	투자법 시행령 제 7조

구분	내용	비고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 합작투자회사	- 외국투자자는 베트남 국내 투자자와 합작으로 기업법에 의거하여 다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주식회사(Share Holding Company) * 합작회사(Partnership Company) *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 - 합작투자 회사는 합작투자 계약서에 의거하여 설립되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직후부터 법적 정체성을 확보 하여 설립, 운영될 수 있음.	투자법 시행령 제 8조
경영협력계약 (BCC)에 의한 회사	- 경영협력계약은 투자자간 투자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날인된 문서에 의한 투자형태로, 별도의 회사설립 없이 각 투자자에게 책임과 사업결과의 배분 조건 등을 명시함.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기타 자원 개발에 관한 경영협력계약(BCC)은 관련법 및 투자법에 의거하여 시행 - BCC 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베트남 내에 운영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며 투자승인 기관에 등록돼야 함.	투자법 시행령 제 9조 및 10조

구분	내용	비고
자본출자, 지분매입, M&A형태 투자	- 기업법에 의거하여 경영참여를 위해 자본금 부담,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의 권리를 보유한 투자가는 자본 참여, 지분인수, 기업인수 및 합병 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음. - 베트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베트남 기업에 대해 자본 참여,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할 수가 없음. - 베트남에서 기업 또는 기업의 지사를 합병, 인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저촉되지 말아야함. * 기업법상 지분 매입, 인수 및 합병 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 *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거나 1년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외국 투자가는 투자 승인 기관에 투자승인서 발급 전 충분한 계획을 설명해야 함. -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기업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상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투자법 시행령 제 11조

구분	내용	비고
Share Holding Company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인 투자	- 외국인 투자 Share Holding Company는 기업법에 의거하여 구성, 설립된 회사를 의미함. - 동 사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외국인 발기 주주를 보유함. - 동사는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직후 법적 정체성을 보유함.	투자법 시행령 제 12조
지사, 연락사무소	- 베트남에 설립된 경제주체는 본사 이외의 지역에 지점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권리가 있음. - 해외지점 또는 해외 연락사무소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해외 투자 규정에 따름. - 베트남에 투자활동 목적으로 지사를 설립하는 외국 투자자의 경우 베트남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조약의 조건 및 추진일정에 따름.	투자법 시행령 제 13조

구분	내용	비고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형태 변경	- 투자허가를 취득한 외국 투자 기업은 투자법에 따라 투자 형태 변경이 가능함. - 투자형태 변경은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지침에 따르며, 투자형태 변경절차는 투자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름.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형태 변경 절차(투자법시행령 80조)> - 투자형태 변경은 기업법의 기업 형태 변경 규정에 따름. - 투자가는 다음 서류를 제출함. * 합작투자기업 이사회 또는 투자가(100% 단독투자 시)의 투자형태 변경 결정 증빙 서류 * 정관, 경영협력 계약서 - 기업형태 변경 15일 전, 종업원에게 통보된 기업주의 기업형태 변경 결정문서 - 기업형태 변경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투자 승인 당국은 투자형태를 변경하고, 이를 투자 가에게 통지해야 함.	투자법 시행령 제 14조

□ 기업 형태별 정의 및 등록 시 필요서류(베트남 기업법 기준)

회사형태	정의	등록 시 필요서류
Private Company	- 개인소유 기업으로 무한 책임을 짐.	- 등록 신청서류 - 개인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법적 자본금 납입 증명서 - 법규상 전문 자격증 필요분야의 사업추진 시, 책임자 및 기타 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확인서
Partnership Company	- 2명 이상의 사원이 회사를 공동 소유하고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을 수행하며 무한책임 사원이외에 유한책임 사원도 둘 수 있음. -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으로서 회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등록 신청서류 - 개인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법적 자본금 납입 증명서 - 법규상 전문 자격증 필요분야 사업추진 시, 책임자 및 기타 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확인서 - 합작관련 내용이 명시된 회사정관 사본 - 합작사원 명단 및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회사형태	정의	등록 시 필요서류
Limited Liability Company	- 사원이 개인 또는 단체로서 총 사원수가 50인 이하임. - 사원은 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사원간 투자지분은 회사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함.	- 등록 신청서류 - 법적 자본금 납입 증명서 - 법규상 전문 자격증 필요분야 사업추진 시, 책임자 및 기타 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확인서 - 회사정관 사본 - 발기인 명단 및 각각의 개인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발기인이 단체일 경우 * 단체설립 관련서류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신분증 등 첨부
Share Holding Company	- 법정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된 회사를 의미함. - 주주는 단체나 개인이 될 수 있음. - 최소 주주 수는 3인 이상이며, 최대 주주 수의 제한은 없음. - 주주는 지분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며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	- 상동

□ 회사 형태별 발기인 수 및 의사결정 충족조건(베트남 기업법 기준)

회사형태	최소 자본	최소/최대 발기인	외국인 주식(지분) 취득 한도	이사회 등 의사결정 조건
Private company	규제 없음	최대 1명의 발기인수	외국인 주식(지분)투자 한도는 업종별로 상이함	해당사항 없음.
Partnership company		최소 2명의 발기인수		투자지분의 75% 이상을 소유하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
Limited liability company		- 2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발기인 수 최소 2명, 최대 50명 - 1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회사는 최소 및 최대 발기인수 1명		투자지분의 75% 이상을 소유하는 구성원의 동의
Share holding company		최소 3명 이상의 발기인		이사회 구성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 투자지분의 75% 이상 소유 구성원의 동의

2. 투자자의 권리

☐ 투자보장

- 투자자의 투자자본과 자산은 국유화 및 압류되지 않음.
- 국익 목적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 필요 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에게는 국제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함.

☐ 지적 재산권 보호

- 베트남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장

☐ 무역관련 투자 및 시장개방

- 투자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 국내 상품 및 국내 생산자 제품 우선 구매
 - 국내 생산, 공급,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비율 유지 의무
 - 수출로 얻어진 외환으로 수입 외환 수요의 균형유지 의무
 - 상품 생산 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한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연구, 개발활동 비율 유지 의무
 - 국내 또는 국외의 특정한 지점으로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의무
 - 특정한 지점에 본사 설치 의무

□ 자본 및 자산의 국외 이전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경영활동을 통한 이윤
 - 기술, 서비스,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지불
 - 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및 관련 이자
 - 투자자본 및 투자종결 후 각종 자산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각종 자산 및 현금
 - 투자자의 합법적인 개인 소득(개인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는 조건 하에서)

□ 동일한 수수료 적용

- 베트남에서 투자활동 진행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예 : 전기요금 등) 베트남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 받음.

□ 정책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

- 기존 법률 보다 우호적인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을 경우 투자자는 새로운 법률에 대해 권리와 혜택을 적용 받음.
-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이익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 증명서상에 규정된 우대혜택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조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각종 권리, 우대혜택의 지속적인 향유
- 소득세에서 손실 부분 공제
- 프로젝트 활동 목표의 조정
- 일부 필요한 경우 보상심사 실시

○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 조약상 이행 약속으로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는 구체적인 보장 규정을 향후 마련함.

□ 분쟁 해결

○ 베트남 내 투자활동관련 분쟁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 만약 분쟁 당사자 중 한 측이 외국 투자가이거나 모두가 외국투자가일 경우 다음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함.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 위원회
- 외국 중재 위원회
- 국제 중재 위원회
- 각 측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재 위원회

<투자 프로젝트의 분쟁 해결(투자법 시행령 제 96조)>

구분	해결방법	비고
베트남 국내 투자가간 또는 베트남 국내투자가와 베트남 정부기관 간 발생한 분쟁	- 베트남 중재위원회 또는 베트남 법원 결정에 따름.	투자법 시행령 제 96조
분쟁 당사자 중 하나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기업 간 발생한 분쟁	- 하기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결정함. * 베트남 법원 * 베트남 중재위원회 * 특정 외국의 중재원 * 국제중재원 * 양측이 정한 중재원	투자법 시행령 제 96조
베트남 영토 내 투자프로젝트 관련 외국 투자가와 베트남 정부기관 간 발생한 분쟁	- 양 당사자간 별도로 합의하거나 베트남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 기관의 결정에 따름. * 베트남 중재위원회 * 베트남 법원	투자법 시행령 제 96조

☐ 투자 기반에 대한 사용권

- 각종 금융, 기금 사용, 토지 및 자원 사용에 대해 내외국간 동등한 대우를 보장함.

-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 기계 및 설비 임대 혹은 구매 권리를 보장함.

- 인력 고용, 경영상 필요한 외국 관리자 및 기술자 고용의 권리를 보장함(단, 외국과의 국제조약에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 우선).

☐ 투자활동 및 마케팅 권리

- 투자활동 관련 수출, 수입, 광고, 마케팅, 가공 및 재가공 권한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임.

☐ 외환매입, 투자프로젝트 조정 및 양도 권한

- 외환매입 및 투자프로젝트 조정과 양도에 관한 권한을 보장하며, 양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및 베트남 세법이 정한 소득세 납부 시 권리를 인정함.

☐ 토지사용권, 토지 재산 담보 설정

-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허가된 토지 사용권, 토지 관련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 차입 가능함.

3.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지역

□ 투자 우대 지역(투자법 시행령 제 16조 및 부칙 B1, B2)

구분	해당 지역 및 지방성
특별 우대 지역(B1)	Dien Bien, Lai Chau, Son La, Ha Giang, Bac Kan, Cao Bang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Soc Trang
	모든 섬(도서 지역)
	수상실 결정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특별 경제특구 지역(Special Economic Zones)
일반 우대 지역(B2)	Lao Cai, Tuyen Quang, Yen Bai, Hoa Binh, Lang Son, Phu Tho, Thai Nguyen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Ninh Thuan, Thua Thien
	Hue(Hue시는 제외), Quang Nam(Hoi An 제외), Quang Ngai, Binh Dinh(Quy Nhon 제외), Phu Yen, Binh Thuan(Phan Thiet 제외)
	Binh Phuoc, Tay Ninh(Tay Ninh Town 제외)
	Ben Tre, Tra Vin, Soc Trang, Bac Lieu, Ca Mau, Hau Giang, An Giang, Kien Giang, Dong Thap

□ 투자 우대/금지 분야 및 조건부 투자 승인 분야

구분	대상 업종	비고
투자우대분야	<특별 투자우대 분야> 1. 농림수산물 재배 및 양식 2. 경제적 효과가 높은 신제품의 생산 3. 고급 철강, 합금, 비철금속, 특수강, 압연철, 공업용 소결강의 생산 4. 설비, 기기, 정밀부품 생산, 석유, 광산, 에너지 개발 대형 리프팅 설비(기중기) 생산, 금속가공용 설비, 제련 설비의 생산 5. 분석 및 추출기술을 위한 의료설비 생산 6. 식료품 독성물질검사 장비 생산 7. 새로운 원자재, 희귀 원자재의 생산, 생화학에 관한 신기술 응용, 통신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8. 정보통신(IT)제품 생산 9. 하이테크 산업, 신규 산업 10. 총매출액의 2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투자프로젝트 11. 폐기물 처리설비 투자 및 생산 12. 오염처리 및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 13. 항생제 원료 생산 14. BOT, BTO, BT 계약 투자 15. 정규 근로자 5,000명 이상 고용	투자법 시행령 부칙 A

구분	대상 업종	비고
투자우대분야	<일반 투자우대 분야> 1. 광물 탐사 및 가공 2. 황무지, 민등산 등의 산간지대에 장기 목적 수목과 과실수 재배, 농림어업을 위한 미개발 지역 개발 3. 원양어업 및 수산물 보관 4. 농·림(국내 천연림 제외)·어업 가공 5. 식품 보관, 수확 농산물 보관 6. 석유화학 산업 개발, 유전 및 가스 파이프, 원유 저장시설, 항구 건설 및 운영 7. 정밀기계설비, 안전검사 및 통제 설비 제조와 생산, 금속 및 비금속 금형 (지그(JIG), 다이스(DIES))생산 8. 중·고압 전기 장비 생산 9. 선진기술을 이용한 디젤엔진 생산, 운송선, 어획선용 부품장비 동력, 수력, 압력기기 및 부품의 생산 10.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생산, 중장비 조립과 생산, 건설용 수송기기 및 기계, 운송 분야의 기술설비 생산 11. 선박 건조 및 수리, 선박용 엔진 생산, 여객선, 어획선용 부품 장비 12. 통신, 인터넷 장비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정보통신제품 제외) 13. 우편 서비스, 정보통신 연구, 인력교육 서비스 14.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장비 생산	투자법 시행령 부칙 A

구분	대상 업종	비고
투자우대분야	15. 농림업용 설비 및 부품기기, 식품가공 기기, 관개장비 생산 16. 섬유, 의류산업용 설비 생산 17. 각종 농약(살충제)원료 생산 18. 각종 식물보호제, 살충제, 동물(해양동물 포함)치료제, 40% 이상의 국산화율을 이룬 수의약품 19. 기초 화학약품, 정제 화공약품, 염료, 전용 화공약품의 생산 20. 세제원료, 화학첨가제 생산 21. 특수 시멘트, 복합원료, 절연재, 절전재, 절습재, 목재 대체재, 새로운 형태의 원자재, 단열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섬유의 생산 22. 각종 경 건축자재 생산 23. 펄프 생산 24. 섬유, 각종 섬유사, 원사, 피혁 생산 25. 항생제 원료를 제외한 각종 의약품 원료 생산, 인체용 의약품 생산, 약품보관설비, 홍수, 자연재해에 대비한 의약품 보관설비 26. 에너지 개발, 신규 발전소 건설, 전력 보급,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시설건설 27. 대중교통 시스템개발, 철도, 17인승 이상 차량 대상의 도로운송 시스템, 수로 대중교통시스템 개발 28. 교량, 도로, 공항, 내륙 수로, 항구, 역사, 터미널, 버스 정류장, 주차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	투자법 시행령 부칙 A

구분	대상 업종	비고
투자우대분야	29. 상수도 공장, 하수시스템 건설 30.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 31. 농림어업 기술지원 서비스 수목 재배, 가축 사육, 수산 및 양식업, 고품질·고가치 인공종자 보호 지원서비스, 농림 수산물 보관 서비스 및 보관 창고 건설 32. 소금정제 및 생산 33. 半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건립,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연수원 및 훈련원, 전문대학교, 대학교 건립 34. 문화시설 건설, 전통음악 공연단 설립, 전통악기 생산 및 수리, 민속 박물관 및 전통문화원 보존 35. 민간병원, 개인의원 건설, 보건예방 서비스 센터 건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 의료 분석 추출장비를 제외한 의료장비, 휠체어, 장애자용 기구, 정형외과 기구 등 생산 36. 법률자문, 투자자문, 경영관리, 과학기술 자문, 지적 재산권 및 기술이전 37. 도시외곽(교외)지역 혹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단지, 경제특구로의 생산시설 이전 38. 어린이용 장난감 생산 39. 벼, 목화 재배, 가공공업용 대나무, 의약용 나무 재배(농림수산물용 재배는 제외), 새로운 품질의 경제성 있는 수종 및 가축 종자를 제외한 종자 생산 40. 농장단위의 농업경제기반 구축에 따른 가축류 및 가금류 사육	투자법 시행령 부칙A

구분	대상 업종	비고
투자우대분야	41. 피혁산업분야, 광산개발용 기계, 산업용 로봇, 발전기 등의 생산 42. 석탄, 활성탄, 비료 생산 43. 각종 전통 수공예품 생산 : 조각, 음악, 락카 페인트, 석재 조각, 대나무 제품, 카페트, 실크, 자수제품, 직조제품, 도자기, 동판(브론즈) 예술품, 부적종이 등의 생산 44. 제1유형 시장, 전람회장, 전시회장 건설, 무역진흥 시설 건설,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및 대출 활동 45. 정박 서비스, 해양구조 서비스 46. 국가 관광단지, 생태 관광단지, 국립공원 건설, 체육공원, 엔터테인먼트 공원, 유원지 등의 문화 공원 건설 투자 47.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시설 48. 신규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 목적의 기술 연구소 건설 : 실험실, 연구실 49. 정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투자법 시행령 부칙 A

구분	대상 업종	비고
투자금지분야	1.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 방위물자 생산 - 의약품 보조제 생산 2.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3.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자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4. 외부에서 베트남으로 유독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투자법 시행령 부칙 B3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공통 조건부 투자 승인 분야> 1. 산업용 화학물질 및 폭약 생산 2. 국방 관련 제품 생산 3. 국방 및 안보 관련 무기, 장비 및 부속품 4. 사냥용, 스포츠용 총기류 생산 5. 방사선 물질 함유 제품, 방사선을 원료로 한 설비 등의 생산 6. 국제표준에 명기된 화학물질 생산 7. 금융 중개업 설립 투자 : 은행, 금융회사, 리스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채권관리 회사, 금은 및 귀금속 경영사, 외환 취급 회사 8. 지폐, 수표, 동전 생산 9.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자문 서비스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A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B - 투자법 시행령 제 56조 - 투자법 시행령 제 69조

구분	대상 업종	비고
조건부 투자분야	10. 의약품 생산 11. 환경오염 유발 제품, 공공보건 영향 유발 제품 생산 12. 의료 서비스, 고전의학 서비스 13. 신문, 라디오, TV 방송 활동 14. 문화상품 생산, 출판, 유통 15. 공연, 외국합작영화 제작 16. 광고 서비스 17. 부가통신 서비스 18. 기초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설치, 운영, 보수 유지 등 19. 국내, 장거리, 국제전화 등의 유선 통신 서비스 20. 광물, 석유 탐사 및 가공 21. 항공, 철도, 수로 운송업, 여객운수업, 항구, 공항 건설 22. 항만 및 공항 운영 23. 카지노, 경마, 경견(競犬) 운영,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 운영 24. 디스코텍, 가라오케 운영 25. 지질 기초조사, 수자원, 토지, 광물 등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 26. 지도측정 및 제작 27. 영해, 연안, 내륙, 경제특구지역 내 수산업 28. 半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건립, 대학교, 직업고등학교, 직업연수원 및 훈련원 건립 29. 법률 서비스, 자문 서비스(기술 자문 제외) 30. 회계, 세금 서비스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A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B - 투자법 시행령 제 56 조 - 투자법 시행령 제 69조

구분	대상 업종	비고
조건부 투자분야	31. 국가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산업분야에 속한 프로젝트 32. 투자가 제한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분야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대상 조건부 승인분야> 1. 라디오 및 TV 방송 2. 문화상품의 생산, 출판 및 유통 3. 보험, 은행, 중개, 주식, 현금 및 관련서비스 분야에 투자 4. 광물탐사 및 채굴 5. 통신장비 설치, 운영 및 보수 유지 6. 항만과 공항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도로, 해상 및 수로 여객운송 8. 수산 및 해산물 채취 9. 부동산 분야 10. 수출입 및 유통업 분야 11.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외국투자자의 시장접근이 제한된 분야에 투자 12.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국투자자에 대한 투자승인 조건은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조약에서의 제한분야 및 제한방법에 따라 투자제한 됨.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A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B - 투자법 시행령 제 56 조 - 투자법 시행령 제 69조

구분	대상 업종	비고
조건부 투자분야	<수상실 승인조건 분야> 1. 항구 및 공항, 국도, 해상 및 항공분야 개발 및 운영 분야 2. 원유, 가스 귀금속 및 희귀 광물 탐사, 채굴 및 가공 분야 3. 우편 및 통신 분야 4. 라디오 방송, TV, 인쇄 및 출판 사업 5. 카지노 건설 및 운영 분야 6. 담배제조 및 가공 분야 7. 대학, 전문학교 및 유사기관에서의 교육 훈련 서비스 분야 및 과학연구소 설립 8. 지리, 설문조사, 전망 관련 기초조사 활동 서비스 분야 및 토지조사, 수자원, 광물 자원 조사 분야, 지도 제작 및 인쇄분야 9. 상기 분야에 속하지 않으나 투자금액이 1조 5,000억 VND(약 1억불) 이상이면서 하기 분야에 속하는 분야 - 교통개발, 산업공단개발, 수출가공공단 개발, 하이테크 공업단지개발, 경제 및 지역개발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BOT, BTO, BT 조건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 에너지 개발, 광물개발 및 가공, 철강석 채굴, 석유화학 가공분야 - 외국자본으로 관광단지, 엔터테인먼트 공원 개발 분야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A - 투자법 시행령 부칙 D-B - 투자법 시행령 제 56 조 - 투자법 시행령 제 69조
일반분야	상기 분야를 제외한 분야	

4. 투자인센티브 내용 및 우대조건

☐ 세금 우대

- 투자우대 분야의 투자자는 우대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우대세율의 적용기간, 면세기간, 세금 감면기간 등은 세법의 규정에 따름.
- 투자우대 분야의 투자 기업이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세법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지분매입, 자본출자로부터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세율 혜택을 받음.
- 투자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법과 수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됨.
- 투자우대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음.

□ 세금우대 내용 및 적용 법규

우대대상	적용법규	비고
법인소득세 우대	- 법인세법에 따라 하기내용 적용 * 법인세 우대 * 법인세 우대기간 제공 * 법인세 면제기간 제공 * 법인세 감면 등	- 투자법 시행령 제 19조 - 법인세법 시행령 164장35조
수출입관세 우대	- 수출입 법에 따른 세금 감면 * 투자우대분야 또는 투자우대지역에서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고정자산, 원부자재, 부품 등의 수입 시 생산연도로부터 5년간 면세 가능	- 투자법 시행령 제 20조 - 수출입법 제 16조
토지사용료 우대	- 투자우대분야 및 우대지역에 속한 프로젝트는 토지법에 의거하여 다음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토지 임차료 면제 및 삭감 * 양식용 해수면 사용료 면제 및 삭감	- 투자법 시행령 제 21조 - 토지법
투자인센티브 적용 절차	- 투자인센티브 대상 및 부여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투자인센티브 수혜 조건을 결정, 투자승인 당국에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함. 투자 승인 당국은 투자 허가(확인)서 상에 명시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브 조항의 규정 및 토지 인센티브 제공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 내용을 명시함. - 해당 부처는 투자허가(확인)서 명시내용 및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투자자가 실제 충족시킨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 - 우대를 제공하는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승인 당국은 우대조항을 투자 허가(확인)서에 명시해야함. - 투자허가(확인)서에 명시된 우대내용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인센티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법적 지위를 획득함.	- 투자법 시행령 제 22조

□ 법인세 우대 투자프로젝트 및 우대 세율(법인세법 시행령 164장 35조)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 세율	우대 가능 기간	면제기간
<특별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1. 농림수산물 재배 및 양식 2. 경제적 효과가 높은 신품종의 생산 3. 고급 철강, 합금, 비철금속, 특수강, 압연철, 공업용 소결강의 생산 4. 설비기기, 정밀부품 생산, 석유, 광산, 에너지 개발용 대형 리프팅 설비(기중기), 금속가공용 설비, 제련 설비의 생산 5. 분석 및 추출기술을 위한 의료설비 생산 6. 식료품에 대한 독성물질검사 장비 생산 7. 새로운 원자재, 희귀 원자재의 생산 및 생화학에 관한 신기술 응용, 통신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8. 정보통신(IT)제품 생산 9. 하이테크 산업, 신규 산업 10. 총매출액의 2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11. 폐기물 처리설비 투자 12. 오염처리 및 환경보호, 폐기물 처리 13. 항생제 원료 생산 14. BOT, BTO, BT계약의 투자 15. 정규 근로자 5,000명 이상 고용	20%	10년	- 완전면제: 최초 2년간 -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 특별우대: 완전 면제기간 이후 5년간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 세율	우대 가능 기간	면제기간
<일반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 광물 탐사 및 가공 - 황무지, 민등산 등의 산간지대에 장기목적 수목과 과실수 재배, 농림어업을 위한 미개발 지역 개발 - 원양어업 및 수산물 보관 - 농·임(국내 천연림 제외)·어업 가공 - 식품 보관, 수확 농산물 보관 - 석유화학 산업 개발, 유전 및 가스 파이프, 원유 저장시설 및 항구 건설과 운영 - 정밀기계설비, 안전검사 및 통제 설비 제조 및 생산, 금속 및 비금속 금형 (지그(JIG), 다이스(DIES)) 생산 - 중·고압 전기 장비 생산 - 선진기술을 이용한 디젤엔진 생산, 운송선, 어획선용 부품장비 동력, 수력, 압력기기 및 부품의 생산 - 자동차, 오토바이부품 생산, 중장비 조립 및 생산, 건설용 수송기기 및 기계, 운송 분야의 기술설비 생산 - 선박 건조 및 수리, 선박용 엔진 생산, 여객선, 어획선용 부품장비 - 통신, 인터넷장비 생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정보통신제품 제외) - 우편 서비스, 정보통신 연구, 인력교육 서비스	20%	10년	- 완전면제: 최초 2년간 -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 특별우대: 완전 면제기간 이후 5년간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 세율	우대 가능 기간	면제기간
14.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장비생산 15. 농림업용 설비, 식품가공기기, 관개장비 생산 16. 섬유, 의류산업용 설비 생산 17. 각종 농약(살충제) 원료 생산 18. 각종 식물보호제, 살충제, 동물 (해양동물 포함)치료제, 40% 이상의 국산화율을 이룬 수의약품 19. 기초 화학약품, 정제 화공약품, 염료, 전용 화공약품의 생산 20. 세제원료, 화학 첨가제 생산 21. 특수 시멘트, 복합원료, 절연재, 절전재, 절습재, 목재 대체재, 새로운 형태의 원자재, 단열재, 건설용 플라스틱, 유리섬유의 생산 22. 각종 건축자재 생산 23. 펄프 생산 24. 섬유, 각종 섬유사, 원사, 피혁 생산 25. 항생제 원료를 제외한 각종 의약품 원료 생산, 인체용 의약품 생산, 약품 보관설비 건설, 홍수, 자연재해에 대비한 의약품 보관 설비 26. 에너지 개발, 개선, 절약, 신규 발전소 건설, 전력보급,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시설 건설 27. 대중교통 시스템개발, 철도, 17인승 이상 차량 대상의 도로운송 시스템, 수로 대중 교통시스템 개발	20%	10년	- 완전면제: 최초 2년간 -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 특별우대: 완전 면제기간 이후 5년간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 세율	우대 가능 기간	면제기간
28. 교량, 도로, 공항, 내륙수로, 항구, 역사, 터미널, 버스 정류장, 주차시설 등의 건설 및 개보수 29. 상수도 공장, 하수시스템 건설 30.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 31. 농림어업 기술지원의 서비스, 수목재배, 가축사육, 수산 및 양식업, 고품질·고가치의 인공종자 보호 지원서비스 농림수산물 보관 서비스 및 보관 창고 건설 32. 소금정제 및 생산 33. 半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건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업학교, 직업연수원 및 훈련원, 전문대학교, 대학교 건립 34. 문화시설 건설, 전통음악 공연단 설립, 전통악기 생산 및 수리, 민속 박물관 및 전통문화원 보존 35. 민간병원, 개인의원 건설 보건예방서비스 센터 건설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복지 센터 건립, 의료분석, 추출장비를 제외한 의료장비, 휠체어, 장애자용 기구, 정형 외과 기구 등의 생산 36. 법률자문, 투자자문, 경영관리, 과학기술 자문,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37. 도시 외곽(교외)지역 혹은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단지, 경제특구로의 생산시설 이전 38. 어린이용 장난감 생산	20%	10년	- 완전면제: 최초 2년간 -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 특별우대: 완전 면제기간 이후 5년간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 세율	우대 가능 기간	면제기간
39. 벼, 목화재배, 가공 공업용 대나무, 의약용 나무 재배(농림수산용 재배는 제외), 새로운 품질의 경제성 있는 수종 및 가축 종자를 제외한 종자 생산 40. 농장단위의 농업경제기반 구축 프로그램에 따른 가축류 및 가금류 사육 41. 피혁산업분야, 광산개발용 기계, 산업용 로봇, 발전기 등의 생산 42. 석탄, 활성탄, 비료생산 43. 각종 전통 수공예품 생산 : 조각, 음악, 락카 페인트, 석재조각, 대나무제품, 카페트, 실크, 자수제품, 직조제품, 도자기, 동판(브론즈)예술품, 부적종이 등의 생산 44. 제 1유형 시장, 전람회장, 전시회장 건설, 무역진흥 시설 건설, 국민신용기금의 자본 동원 및 대출 활동 45. 정박 서비스, 해양구조 서비스 46. 국가 관광단지, 생태 관광단지, 국립공원 건설, 체육공원, 엔터테인먼트 공원, 유원지 등의 문화공원 건설 투자 47. 폐기물 처리 및 수집 시설 48. 신규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 목적의 기술 연구소 건설 : 실험실, 연구실 49. 정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20%	10년	- 완전면제: 최초 2년간 -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3년간 * 특별우대: 완전 면제기간 이후 5년간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 세율	우대 가능 기간	면제기간
<일반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1)> 1. Lao Cai, Tuyen Quang, Yen Bai, Hoa Binh, Lang Son, Phu Tho, Thai Nguyen성 2. Thanh Hoa, Nghe An, Ha Tinh, Quang Binh, Quang Tri, Thua Thien Hue(Hue시 제외), Quang Nam (Hoi An시 제외), Binh Dinh (Quy Nhon시 제외), Phu Yen, Binh Thuan(Phan Thiet시 제외), Ninh Thuan 성 3. Tay Ninh (Tay Ninh시 제외), Binh Phuoc 성 4. Ben Tre, Tra Vinh, Soc Trang, An Giang, Kien Giang, Dong Thap, Bac Lieu, Ca Mau, Hau Giang성	20%	10년	- 완전면제: 최초 2년간 -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6년간
<특별 우대 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2)> 1. Dien Bien, Lai Chau, Son La, Ha Giang, Bac Kan, Cao Bang성 2. Kon Tum, Gia Lai, Dak Lak, Dak Nong, Soc Trang성 3. 섬(도서)지방 4. 수상의 결정에 따른 개발 장려 경제특구	15%	12년	- 완전면제: 최초 2년간 - 50%감면: 완전 면제기간 이후 8년간

적용대상	법인세 우대세율	우대 가능 기간	면제기간
일반 우대지역(B1)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분야(A) 및 일반우대 분야(A2) 투자프로젝트	15%	12년	- 완전면제: 최초 3년간 - 50%감면: 완전면제 기간 이후 7년간 * 특별우대: 완전면제 기간 이후 8년간
특별 우대지역(B2)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분야(A) 및 일반우대 분야(A2) 투자프로젝트	10%	12년	- 완전면제: 최초 4년간 - 50%감면: 완전면제 기간 이후 7년간 * 특별우대: 완전면제 기간 이후 8년간

주1 : 법인세법 시행령 Decree No.164/2003/ND-CP 제 35조 기준 적용
(2003.12.22)

주2 : 일반기업 법인세율은 28%임.

주3 : 법인세 50%감면 특별우대 조건(고용효과 큰 프로젝트)

- 도시지역 : 100명 이상 고용 시
- 일반우대지역 및 특별우대지역 : 20명 이상 고용 시
- 기타 지역 : 50명 이상 고용 시

□ 토지사용에 대한 우대조항

- 투자프로젝트의 토지사용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타 조건의 투자(인프라 건설 등 투자액이 큰 반면 장기간 투자회수가 불가피한 투자, 낙후지역 투자 등)는 70년까지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음.
- 토지사용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투자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희망할 때 국가기관은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맞추어 토지사용 시한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
- 투자우대분야, 우대지역 투자 시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음.

□ 토지사용료 우대조항

적용 대상	토지사용료 면제 기간
특별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 우대 표 참조	7년 면제
일반 투자우대 분야(투자법 시행령 부칙 A) :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 우대 표 참조	3년 면제
일반 우대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1) :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우대 표 참조	7년 면제
특별 우대투자 지역(투자법 행령 부칙 B2) : 세부 대상 분야는 법인세우대 표 참조	11년 면제
일반 우대지역(B1)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 분야 및 일반 우대분야 투자 프로젝트	11년 면제
특별 우대지역(B2)에서 시행되는 특별우대 분야 및 일반 우대분야 투자프로젝트	11년 면제

근거: 토지법 시행령 Decree No. 142/2005/ND-CP 제 14조 및 15조

5. 투자등록절차, 신청서류, 심사기준

□ 투자 신청 접수 및 투자 허가/등록 기관

기관명	대상 투자 프로젝트	비고
MPI	- 하기 프로젝트는 MPI가 투자승인(등록)서 발급, 수정, 취소 권한이 있음. * 투자법 시행령 제 52조에 언급된 수상실 승인을 취득한 프로젝트 * 투자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언급된 투자 프로젝트 분야로써 투자 금액이 8,000억 VND(약 5천만불)이상 1조 5,000억 VND(약 1억불)미만의 투자 프로젝트 * 투자규모가 8,000억 VND(약 5,000만불) 이상의 투자프로젝트 <투자법 시행령제 52조 2항 언급 투자 프로젝트 분야> - 교통 개발, 산업공단 개발, 수출가공공단 개발, 하이테크 공업단지 개발, 경제 및 지역개발 등 인프라 건설프로젝트와 BOT, BTO, BT조건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 에너지 개발, 광물개발 및 가공, 철강석 채굴, 석유화학 가공분야(Petroleum Processing) - 외국자본으로 관광단지, 엔터테인먼트공원 개발 분야	투자법 시행령 제 54조

기관명	대상 투자 프로젝트	비고
지방성/시 인민위원회	- 투자법 시행령 제 52조, 54조, 56조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 * 수상실 허가대상 프로젝트(시행령 제 52조) * MPI 허가대상 프로젝트(시행령 제 54조) *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 단지, 경제특구 내 대상 프로젝트(시행령 제 56조)	투자법 시행령 제 55조
공단관리 위원회	- 지방성, 시 인민위원회 승인/등록 대상 프로젝트, 중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하이테크 단지, 경제특구 내에서 수행되는 투자프로젝트	투자법 시행령 제 56조

□ 투자 업종별 필요절차, 신청서류 및 승인 기준

투자분야	투자규모 (단위: VND)	필요 절차	투자절차 및 신청서류	관련 법조항
투자 우대분야 및 일반분야 국내 투자 프로젝트	150억 미만	기업법에 의거 사업자 등록 절차로 완료 (투자 인센티브 요청 시 투자등록 필요)	<투자인센티브 수혜 희망 시 등록서류> - 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투자자 법적자격 - 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 프로젝트 시행 일정 - 토지사용면적 및 환경보호 확약서 - 투자 인센티브 요청서 - 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 재원 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의 재정지원 증빙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 - 회사 형태별 기업법상 요구되는 사업자의 등록 신청 서류 일체	투자법 시행령 제 58조

투자분야	투자규모 (단위: VND)	필요 절차	투자절차 및 신청서류	관련 법조항
투자 우대분야 및 일반분야 국내 투자 프로젝트	150억-3천억	투자 등록	<투자등록 제출서류(투자법 제 45조 3항)> - 투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투자자 법적자격 - 투자 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 - 투자 자본, 투자 프로젝트 시행 일정 - 토지사용면적 및 환경보호 협약서 - 투자 인센티브 요청서 (있을시)	투자법 시행령 제 60조 (소요 기간: 15일 이내)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투자심사 제출서류> - 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 (투자법시행령 제62조 1항) - 기업법에 준한 투자자 법적자격 확인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1-b항) - 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 (시행령 62조 1-c 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 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 - 투자 경제, 기술설명서 (시행령 62조 1-d) *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소요 기간: 30일 이내)

투자 우대분야 및 일반분야 국내 투자 프로젝트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이행계획 * 투자 기술 설명서 * 투자 환경설명서 - 회사 형태별 기업법상 요구되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일체 (투자법시행령 62조 1-e 항) - 회사 이사회 의사결정 및 승인증빙 공문 사본 (시행령 62조 1-d 항) <투자심사 내용> - 기술기반시설개발 계획 - 토지사용개발 계획 - 건설개발 계획, 광산 및 기타 자원이용 개발 계획과의 적합성 - 토지사용면적 - 프로젝트이용 계획 - 환경문제 관련 해결책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소요 기간: 30일 이내)
투자 우대분야 및 일반분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3천억 이하	투자 등록	<투자등록 제출서류> -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투자법 시행령 제 61조 2항) * 투자자 법적자격 (투자법 제 45조 3항) * 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 시행 일정 * 토지사용면적 및 환경 보호 협약서	투자법 시행령 제 61조 (소요 기간: 15일 이내)

투자 우대분야 및 일반분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3천억 이하	투자 등록	* 투자인센티브 요청서 (있을시) - 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 (투자법 시행령 61조 2-c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 (투자법시행령 61조 2-b항) - 회사 형태별 기업법상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일체(투자법 시행령 61조 2-d항)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투자심사 제출서류> - 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 (투자법시행령 제 62조 1항) - 기업법에 준한 투자자의 법적자격 확인서 (투자법시행령 제 62조 1-b항) -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 (시행령 62조 1-c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투자법 제 48조,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소요 기간: 30일 이내)

투자 우대분야 및 일반분야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 - 투자 경제, 기술설명서 (시행령 62조 1-d) * 투자프로젝트 목적 *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이행 계획 * 투자 기술 설명서 * 투자 환경설명서 - 외국투자자는 합작계약서 또는 BCC계약서, 기업 정관(있을 경우) - 회사 형태별 기업법상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일체(투자법 시행령 62조 1-e항) <투자심사 내용(투자법 제 48조)> - 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 심사 - 기술기반시설 개발계획 - 토지사용 개발계획 - 건설개발계획, 광산 및 기타 자원이용 개발 계획과의 적합성 - 토지사용면적 - 프로젝트 이용계획 - 환경문제 관련 해결책	투자법 제48조, 투자법 시행령 제62조 (소요 기간: 30일 이내)
--	--------	-----------------------	---	--

투자분야	투자규모 (단위: VND)	필요 절차	투자절차 및 신청서류	관련 법조항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하	투자 심사, 투자 허가	<투자심사 제출서류> 1. 국내투자프로젝트의 경우 - 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1항) * 투자자 법적자격 (투자법 제 45조 3항) * 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 시행 일정 * 토지사용면적 및 환경 보호 협약서 - 기업법에 의거한 투자자의 법적자격 확인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1-b항) - 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 (시행령 62조 1-c 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 - 투자 경제, 기술설명서 (시행령 62조 1-d) * 투자프로젝트 목적	투자법 시행령 제 63조 및 64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하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이행계획 * 투자기술 설명서 * 투자환경 설명서 - 외국투자 경우 합작계약서 또는 BCC계약서, 기업 정관(있을 경우) - 국내 투자의 경우 회사 이사회 의사결정 및 승인증빙 공문 사본 (시행령 62조 1-d 항) - 회사 형태별 기업법상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일체(투자법 시행령 62조 1-e 항) - 투자승인 조건 충족 방안 설명서(투자법 시행령 64조 1-b항) 2.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 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1항) * 투자자의 법적자격 (투자법 제 45조 3항) *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일정 * 토지사용면적 및 환경 보호 협약서 - 기업법에 준한 투자자의 법적자격 확인서	투자법 시행령 제 63조 및 64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	--------	-----------------------	---	---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하	투자 심사, 투자 허가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1-b항) -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 (시행령 62조 1-c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 - 투자 경제, 기술설명서 (시행령 62조 1-d) *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이행계획 * 투자 기술 설명서 * 투자 환경설명서 - 외국투자의 경우 합작 계약서 또는 BCC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 - 국내 투자의 경우 회사 이사회 의사결정 및 승인 증빙 공문 사본 (시행령 62조 1-d항) - 회사 형태별 기업법상 요구되는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 일체 (투자법 시행령 62조 1-e항) - 투자승인 조건 충족 방안 설명서(투자법 시행령 64조 1-b항)	투자법 시행령 제 63조 및 64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	--------	-----------------------	--	---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하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 (투자법 49조 1-a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 (투자법 49조 1-a항) <투자심사 주요 내용(내외국 투자자의 프로젝트에 공통)> - 투자등록 서류 심사 (투자법 45조 3항) * 투자자의 법적자격 *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및 진행 장소 * 투자자본, 프로젝트 시행계획 * 토지사용 면적 및 환경 보호 협약조건 *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 투자 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의 설명서 심사(투자법 시행령 64조 2-b항) - 베트남이 체결한 조약 및 특별법 위배여부 심사 (투자법 시행령 64조 3-a항)	투자법 시행령 제 63조 및 64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	--------	-----------------------	---	---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하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외국투자자는 투자법 시행령 부칙 D항에 명시된 조건부 허용분야를 준수해야 함(투자법 시행령 64조 3-a항). - 프로젝트 추진 기간 중 투자자의 관련법 및 규정 준수 여부(투자법 시행령 63조 1항) -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기업법에서 규정한 회사형태 적격성 및 등록 서류 적격여부 심사 (투자법 시행령 64조3-b항)	투자법 시행령 제 63조 및 64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투자심사 제출서류> - 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1항) * 투자자 법적자격 (투자법 제 45조 3항) * 투자프로젝트 목적, 규모, 장소 * 투자자본, 투자프로젝트 시행일정 * 토지사용면적 및 환경 보호 협약서 - 기업법에 준한 투자자의 법적자격 확인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1-b항) - 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 (시행령 62조 1-c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63조 및 65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조달 능력 증빙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 - 투자 경제, 기술설명서 (시행령 62조 1-d) *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이행계획 * 투자기술 설명서 * 투자환경 설명서 - 외국투자 경우 합작계약서 또는 BCC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 - 국내투자의 경우 회사 이사회 의사결정 및 승인증빙 공문사본 (시행령 62조 1-d항) - 회사형태별 기업법상 요구되는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일체(투자법 시행령 62조 1-e 항) - 투자승인 조건 충족방안 설명서(투자법 시행령 64조 1-b항) - 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 (투자법 49조 1-a항)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 증명서 및 투자재원조달 능력 증빙서류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63조 및 65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	--------	-----------------------	--	--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 재정지원 증빙서류 - 합작계약서 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관(있을 경우) (투자법 49조 1-a항) <투자심사 주요 내용(내외국 투자자의 프로젝트에 공통)> - 투자등록 서류심사 (투자법 45조 3항) * 투자자의 법적자격 *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및 진행장소 * 투자자본, 프로젝트의 시행계획 * 토지사용 면적 및 환경 보호 협약조건 *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해당 시) - 투자 프로젝트가 충족 시켜야 하는 조건의 설명서 심사(투자법 시행령 64조 2-b 항) - 베트남이 체결한 조약 및 특별법 위배여부 심사 (투자법 시행령 64조 3-a항) - 외국투자자는 투자법 시행령 부칙 D항에 명시된 조건부 허용분야를 준수해야 함. (투자법 시행령 64조 3-a항)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63조 및 65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	--------	-----------------------	--	--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프로젝트 추진 기간 중 투자자의 관련법 및 규정 준수 여부(투자법 시행령 63조 1항) -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베트남 기업법상 규정한 회사형태의 적격성 및 등록서류 적격 여부 심사 (투자법시행령 64조 3-b항) <투자법상 심사내용(투자법 제49조 2항)> - 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의 설명서 서류 심사 - 투자 신청서류 심사 * 투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투자자 법적자격 확인서 * 투자자 재정능력 보고서 ○ 최근 2년간 재무상태 보고서 ○ 기존법인의 경우, 은행증명서 및 투자 재원조달능력 증빙 서류 ○ 신규법인의 경우 모기업의 재정지원 증빙서 * 투자 경제, 기술설명서 ○ 투자프로젝트 목적 ○ 투자지역, 투자규모, 투자자본, 투자이행 계획 ○ 투자 기술 설명서 ○ 투자 환경설명서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63조 및 65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	--------	-----------------------	--	---

조건부 투자분야 (내외국인 투자구분 없음)	3천억 이상	투자 심사, 투자 허가	- 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 및 하기 내용심사 (투자법 49조 2-b항) * 기술기반시설 개발계획 * 토지사용 개발계획 * 건설개발계획, 광물 및 기타 자원 이용개발 계획 * 토지사용 면적 * 프로젝트 이행 계획 * 환경문제 관련 해결책	투자법 시행령 제 62조, 63조 및 65조 투자심사 기간 (30일 미만, 필요 시 최대 45일)
-------------------------------------	--------	-----------------------	---	---

□ 수상 승인조건 프로젝트 심사 절차(투자법 시행령 제 66조)

- 투자자 제출 서류 : 총 10부를 제출(이 중 2부 이상이 원본 이어야함)
- MPI는 3일안에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 정부부처 또는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투자 신청서류를 이첩하며 서류 부적격 시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 또는 보완을 요청함.
- 해당 정부부처들은 관련 서류 접수 후 문서로 15일안에 응신 해야 하며 회신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한 내 사유를 통보해야함.

□ MPI(베트남 계획 투자부)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 심사절차(투자법 시행령 제 67조)

- 투자자 제출서류 : 총 10부 (2부는 원본)

- MPI는 3일안에 서류심사를 거쳐 해당 정부부처 또는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투자 신청서류를 이첩하며, 서류 부적격 시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 또는 보완을 요청함.
- 해당 정부부처들은 관련 서류의 접수 후 문서로 15일안에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투자신청 서류에 대해 해당 부처가 담당하는 분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MPI는 각 정부부처 의견을 취합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서류 접수 25일 이내에 수상실에 제출함.
- 만약 민감한 사항에 대한 부처 간 의견충돌이 있을시 수상실 보고 전에 해당 부처간 회의를 주선하여 조정함.
- MPI는 투자신청 서류 및 관련부처 의견, 수상실의 요청 등에 따라 필요 시 투자자에게 투자계획 설명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MPI는 수상실 승인 접수 후 5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승인서를 발급해야함.
- 만약 투자신청서가 거부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동 사실과 이유를 통보함.
- MPI는 투자승인서 발급 7일 이내에 투자승인서 원본을 재무부, 무역부, 환경자원부, 베트남 중앙은행, 기타 해당 정부부처 및 지방성 인민위원회에 전달해야함.

□ 지방성 차원의 투자프로젝트 심사절차(투자법 시행령 제68조)

- 투자자 제출서류 : 총 8부 (2부는 원본)
- 지방성 투자국(DPI)은 투자자가 제출한 서류 접수 후 3일안에 서류심사 및 동 서류를 해당 정부부처 및 성 인민위원회에 송부함.
- DPI의 검토 요청을 접수한 해당부처 및 기관은 해당지역 내 동 프로젝트 추진 시 적용되는 법규 등을 검토한 후 DPI에 문서로 답신을 보내야함.
 - 환경국(Department of National Resources and Environment) : 토지 사용 마스터플랜, 토지 사용 요구 내용, 광물자원 사용계획, 환경문제 해결 대책 등을 검토함.
 - 건설국(Department of Construction) : 건설 마스터플랜, 인프라건설 마스터플랜, 건설기준 및 해결방안, 건설용 토지이용 요구 내용을 검토함.
 -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 투자우대 인센티브 및 지원책을 검토함.
 - 과학기술국(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기술 이전 내용을 검토함.
 - 정부부처 및 해당 기관 : 해당 지역 내 투자를 추진 시 관련사항의 내용을 검토함.
 - 국방 및 치안 관련 분야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 DPI는 각 해당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며 성 인민위원회는 관련 서류의 접수 20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여부를 결정함.
- 동 보고서에는 관련 해당국의 의견 내용이 문서화되어 첨부되어야함.
- DPI는 투자신청 서류와 해당부서의 의견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설명 또는 서류 변경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DPI는 성 인민위원회의 투자승인을 접수 후 5일 이내에 투자승인서를 발급해야 함.
- 만약 투자신청서가 승인 거부당했을 경우 투자자에게 동 사실과 이유를 통보함.
- 투자 규모가 3,000억 VND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분야 중 내 외국인 공통의 조건부 승인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심사는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할 조건에 국한하여 심사함.
- 공단, 수출가공공단, 하이테크 단지, 경제특구 지역 투자의 프로젝트 심사 절차(투자법 시행령 제 69조)
 - 투자자 제출서류 : 총 8부 (2부는 원본)
 - 서류 제출처 : 공단관리위원회(Management Board)

- 내외국인 공통의 조건부 투자승인 분야의 경우, 공단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정부부처 및 기관에 서류를 이첩함.
- 정부부처 및 해당기관은 15일 이내에 해당지역 내 동 프로젝트의 추진 시 적용되는 법규 등을 검토한 후 공단 관리위원회로 검토결과를 문서로 회신해야함.
- 공단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책임짐.
 - 투자승인 신청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및 투자 승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 조건부 투자승인 분야에 대해 투자신청서류 및 관련 정부 부처 의견에 기초하여 필요 시 투자자로 하여금 설명 또는 수정, 서류 보완을 요청함.
 - 만약 투자신청서가 거부당했을 때 투자자에게 동 사실과 이유를 통보함.
- 투자규모가 3,000억 VND이하이며 조건부 투자분야 중 내외국인 공통 조건부 승인분야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심사는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할 조건에 국한하여 심사함.

6. 투자 프로젝트 수정 절차 및 방법

가. 투자프로젝트 수정

☐ 투자프로젝트 변경절차 규정(투자법 시행령 제 70조)

○ 투자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투자자는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을 수정할 권리가 있음.

○ 투자프로젝트의 수정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함.

- 투자등록 절차 및 투자 심사절차의 내용 변경 없는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 수정
- 투자등록 절차 하에서 투자 등록 내용의 변경 또는 투자 승인 내용 변경
- 투자심사 절차 하에서 투자 등록 내용 변경 또는 투자 승인 내용 변경

□ 투자프로젝트의 내용 수정 절차가 필요 없는 투자프로젝트 (투자법 시행령 제 71조)

○ 국내 투자프로젝트로서 내용 수정 후 투자자본이 150억 VND미만이며 조건부 투자승인 분야가 아닐 경우

□ 투자 등록 절차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투자시행령 제 72조)

○ 투자의 목적, 면적, 위치, 형태, 자본 및 추진 기간에 대한 변경과 아래에 속하는 분야

- 국내 투자프로젝트로서 수정 후 투자 자본이 150억-3,000억 VND에 속하며 조건부 투자 분야가 아닌 경우 및 투자 변경 등록이 필요 없는 국내 투자 프로젝트로 수정 후 투자법 시행령 62조에 속해 투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외국 투자 프로젝트로 수정 후 투자자본이 3,000억 VND 이하거나 조건부 투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수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투자조건 변경 양식
 - 투자승인서 사본
 -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합작계약서, BCC(경영협력계약)계약서, 회사 정관(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 포함) 등
- 투자자는 투자승인 기관의 투자내용 변경 승인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지역 투자승인 기관에 투자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투자승인이 이미 발급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내용 변경은 투자승인서 발급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지방성 및 시의 투자승인 기관은 투자자의 투자내용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투자자에게 투자승인서의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함.
- 투자 심사절차 내용 수정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투자법 시행령 제 73조)
 - 투자의 목적, 면적, 위치, 형태, 자본 및 추진 기간에 대한 변경과 아래에 속하는 분야
 - 국내 투자프로젝트로서 수정 후 투자 자본이 3,000억 VND이상인 경우

- 조건부 투자 승인 프로젝트 또는 수정 후 조건부 투자승인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경우
- 투자내용 변경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투자내용 변경 신청서로 동 신청서에는 조건 변경일 현재 프로젝트 추진현황, 투자조건 변경 사유, 최초 투자승인서 발급 시 심사 되었던 내용 대비 예상 변경 사항 등이 명시돼 있어야함.
 - 최초 투자 승인서 사본
 -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합작계약서, BCC(경영협력계약)계약서, 회사정관(변경 또는 추가내용 포함) 등
 - 투자 내용의 변경내용에 따라 조건부 투자승인 분야의 경우 수상실의 서면 변경 동의서; 자원개발 및 환경분야의 경우 해당 정부부처의 서면 변경 동의서; 투자지 변경의 경우 해당 지방성의 인민위원회의 서면 변경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승인내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동 투자프로젝트 담당 부처에서 투자가에 의해 제시된 변경내용을 심사(투자법 시행령 64조, 65조, 68조에 해당사항 여부)
 - 해당 투자승인 부처는 투자가로부터 적절한 투자조건 변경 승인 신청서류의 일체를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 및 수정 여부 결정

□ 기업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내용 수정과 연관된 투자프로젝트의 내용수정(투자법 시행령 제 74조)

○ 투자프로젝트의 내용 변경이 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기업법에 따른 내용 변경을 해야 함.

○ 외국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자 등록 변경 서류는 투자 프로젝트 내용의 수정 서류와 동일함.

- 투자승인 담당 해당 정부부처는 회사형태 변경이나 투자 승인서 변경내용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여 동시에 수정해야함.

나. 외국투자 프로젝트 변경 시 신청 서류(투자법 시행령 제 4장 75조-83조)

구분	내용	근거
100% 외국인투자 기업 정관	- 정관에 기업법 제 22조에 언급된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함. - 또한 다음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함. * 프로젝트 추진 기간 * 프로젝트 추진 진척도 - 기업 정관에는 각 페이지마다 이사회 구성원들의 날인이 있어야 하며, 각 구성원은 정관 마지막 부분에 전원 날인해야 하고 투자승인 기관에 등록되어야함.	투자법 시행령 제 76조 및 77조

100% 외국인투자 기업 정관	<기업법 제22조의 회사 정관 구성내용> 1. 회사명,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2. 영업활동 분야 3. 수권 자본금 및 자본금 증감시 방안 4. Joint Partnership Company의 경우 투자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국적 -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기타 구성원의 신원 증명 서류 -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신원증명서류 5. 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Joint Partnership Company의 경우 구성원별 지분 배분 및 자본금 출자액 현황 -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발기 주주들의 배당주식 수 및 주식형태, 주식가치, 총 주식 수 6. 각 출자자, 주주들의 권한과 의무 7. 회사경영 구조 8. 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법적 대리인 9. 회사 내부 분쟁해결 규정이 포함된 회사 의사결정 방식 10.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이사, 사장, 부사장의 급여, 퇴직금, 보너스 산정방식 및 근거 -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이사, 사장, 부사장, 감사 등에 대한 급여, 퇴직금, 보너스 산정방식 및 근거	투자법 시행령 제 76조 및 77조
-----------------------------	--	--

100% 외국인투자 기업 정관	11.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투자자 및 Shareholding Company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주식을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 및 조건 12. 이익 및 손실 배분 규정 13. 회사 해체 및 흡수 시 절차 14. 회사 정관의 수정 및 추가 절차 15. Partnership Company의 경우 투자 파트너의 성명 및 날인 -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법적 대표자, 소유주, 권한 수임자들의 성명 및 날인 -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법적대표자, 발기 주주, 또는 권한 수임자들의 성명 및 날인 16. 법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소유주들에 의해 작성된 기타 협의사항 등	투자법 시행령 제 76조 및 77조
합작투자 기업의 합작투자계약서 내용	- 합작투자 당사자의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 주소 및 합작투자 회사의 법적 대표자 성명, 주소 - 합작투자회사의 형태 - 영업 활동 부문 - 법정 자본금 및 각 당사자간 자본 제공 비율, 자본조달 방법 및 조달 일정 - 프로젝트의 추진기간 - 주 생산품목 - 합작투자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 자본운영 원칙(이익분할 원칙 및 영업 손실 처리 원칙 등) - 계약서 수정 및 종료 방법(임무 및 활동종료 조건, 기업구조 조정 등)	투자법 시행령 제 77조

합작투자 기업의 합작투자계약서 내용	- 계약 파기 시 책임 의무 및 분쟁 해결 방안 - 기타 양 당사자 간 필요내용 포함 - 합작 계약서는 양 당사자 측 대표가 각 페이지마다 날인해야 하며 계약서 마지막에 전원 날인해야 하고 합작투자 계약은 투자승인서 발급 즉시 효력을 발휘함.	투자법 시행령 제 77조
경영협력계약(BCC) 내용	- 경영협력계약서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경영협력 당사자 대표들의 이름, 주소 또는 추진프로젝트의 주소 및 연락처 * 경영협력 분야 및 목적 * 계약 당사자 간 투자 내용 및 경영 결과 분배 방식, 프로젝트 추진일정 - 주요 생산품명, 수출비중, 국내 소비 비중 - 경영협력계약 기간(외국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법 제 52조에 언급된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 - 재무원칙 - 계약수정, 종료 및 과제 조건 이행 방안 - 계약파기 시 책임 및 분쟁해결 방안 - 기타 양 당사자 간 필요내용 포함 - 경영협력 계약서는 양 당사자 측 대표가 각 페이지마다 날인해야 하며 계약서 마지막 장에 전원 날인해야 하고 경영 협력계약은 투자승인서 발급 즉시 효력을 발휘함.	투자법 시행령 제 78조

기업에 대한 지분 출자 및 M&A 절차	- 투자법 시행령 제 11조에 명시된 투자형태로 기업의 지분투자 및 M&A 희망 투자가는 투자승인 기관에 다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 합병 또는 매매 거래대상 기업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주소 * 기업 또는 지분매각 기업 이사회 의사결정 증빙서류 및 사업 분야 * 잠재 거래 대상자의 이름 및 주소, 연락처 등 *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대상 분야 및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내용 * 매매 거래 내용에 대한 일반적 설명서 * 매매 거래가 베트남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분석 보고서 (특히 투자법 시행령 제 11조에 언급된 투자형태 저촉 여부 포함) <투자법 시행령 제 11조에 언급된 투자 형태> - 기업법에 의거하여 경영참여를 위해 자본금 부담, 지분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의 권리를 보유한 투자가는 자본 참여, 지분인수, 기업인수 및 합병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음. - 베트남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베트남 기업에 대해 자본 참여, 지분 인수, 기업 인수 및 합병을 할 수 없음 - 베트남에서 기업 또는 기업의 지사를 합병, 인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저촉되지 말아야 함.	투자법 시행령 제 79조
--	---	------------------------------

기업에 대한 지분 출자 및 M&A 절차	* 기업법상 지분 매입, 인수 및 합병 규정에 반하지 않을 것 *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거나 1년에 10개 이상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는 외국 투자가는 투자 승인기관에 투자승인서 발급 전 충분한 계획을 설명할 것 - 기업을 인수 및 합병하는 기업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상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투자법 시행령 제 79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형태 변경절차	-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형태 변경은 투자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름. - 투자형태의 전환은 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라야 함. - 투자가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이사회 또는 투자가(100% 단독 투자 시)의 투자형태 변경 결정 서류 * 회사정관 및 경영협력계약서 - 투자형태 변경 결정 15일 전 회사 근로자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기업 소유주의 투자형태 변경 결정 내용 - 투자형태의 변경 신청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투자승인 당국은 투자 허가서(확인서)를 변경하고 투자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해야 함.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형태 전환(투자법 시행령 제 14조) > - 투자허가서 또는 투자등록서를 기 발급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투자법에 의거, 투자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투자법 시행령 제 80조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형태 변경절차	- 투자형태 변경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하며 투자 형태 변경 절차는 투자법 시행령 제 80조에 의거함.	투자법 시행령 제80조
-------------------------	---	--------------------

□ 기업법상 회사 정관 구성내용(기업법 제 22조)

- 회사명,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 영업활동 분야
- 수권 자본금 및 자본금 증감 시 방안
- Joint Partnership Company의 경우 투자 당사자들의 성명, 주소, 국적;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기타 구성원의 신원증명서류;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발기인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신원증명서류
- 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Joint Partnership Company의 경우 구성원별 지분배분 및 자본금 출자액 현황
-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발기 주주들의 배당 주식 수 및 주식형태, 주식가치, 총 주식 수
- 각 출자자, 주주들의 권한과 의무
- 회사경영 구조
- Limited Liability Company 및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법적 대리인

- 회사 내부 분쟁해결 규정이 포함된 회사 의사결정 채택 형식
-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경우 이사, 사장, 부사장의 급여, 퇴직금, 보너스 산정방식 및 근거;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이사, 사장, 부사장, 감사 등에 대한 급여, 퇴직금, 보너스 산정방식 및 근거
-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투자자 및 Shareholding Company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및 주식 인수를 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환경 및 조건
- 이익 및 손실 배분 규정
- 회사해체 및 흡수 시 절차
- 회사정관의 수정 및 추가 절차
- Partnership Company의 경우 투자 파트너의 성명 및 날인;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경우 법적 대표자, 소유주, 권한 수임자들의 성명 및 날인; Shareholding Company의 경우 법적 대표자, 발기 주주, 또는 권한 수임자들의 성명 및 날인
- 법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소유주들에 의해 작성된 기타 협의사항 등

□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형태 전환(투자법 시행령 제 14조)

- 투자허가서 또는 투자등록서를 기 발급받은 외국투자기업은 투자법에 의거, 투자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
- 투자형태 변경은 베트남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하며, 투자형태 변경절차는 투자법 시행령 제 80조에 의거함.

□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형태 전환(투자법 시행령 제 80조)

- 외국투자기업의 투자형태 변경은 투자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름.
- 투자형태의 전환은 기업법에서 규정한 기업형태 전환 규정을 따라야 함.
- 투자가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이사회 또는 투자가(100% 단독투자 시)의 투자형태 변경 결정 서류
 - 회사정관 및 경영협력계약서
- 투자형태 변경 결정 15일 전 회사 근로자 및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보한 기업 소유주의 투자형태 변경 결정 내용
- 투자형태의 변경 신청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투자승인 당국은 투자허가서(확인서)를 변경하고 투자가에게 동 사실을 통보해야 함.

다. 외국투자 프로젝트 시한

- 외국자본이 투자된 프로젝트 시한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는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프로젝트 진행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

-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지역 관할의 토지관리 기관과 접촉, 토지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토지 교부 및 임대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름.
- 투자자가 토지를 교부 받았으나 규정 시한 내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 증명서도 회수함.

마. 건설 부지의 확보 및 준비

- 사안별 건설부지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안별 건설부지 확보 기준>

구분	내용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 수용, 보상 및 부지정리 책임이 있으며 그 이후 투자자에게 임대 가능함.
국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하여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재 임대하는 경우	투자자가 자력으로 토지보상 및 부지정리를 진행해야 함.
투자자가 토지사용자와 보상, 부지 정리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토지 사용자가 미 이행 시	투자프로젝트 실시지역 소재 인민위원회가 법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할 부지정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 실시의 경우	투자자는 토지 수용 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 사용권 임대가 가능함.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기술, 설계, 예산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건축법에 따라 시행함.

바. 투자자의 유통업 활동

-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대리점을 통해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 할 수 있고 상품소비(판매)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음.
-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결정권한이 있고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국가 관계기관 공표 가격체계에 따름.

사. 투자프로젝트의 일시정지, 투자증명서 회수

-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 일시 중지 시,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통보하여 정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음.
- 투자증명서 발급 12개월경과 후 투자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능력이 없을 경우 투자증명서를 회수함.

7.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투자법 시행 후 기업 재등록 절차

☐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 시행에 따른 재등록

- 기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투자허가를 취득해 활동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새로운 투자법 발효 시 재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등록 여부	구분	적용 내용
재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기업권한	- 기 발급받은 투자허가서에 준한 투자 인센티브 수혜, 활동 기간보장, 사업분야의 영업지속 및 기 발급받은 투자허가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대체함. - 재등록 하지 않는 외국투자기업에서의 합작계약서 및 회사 정관 등 기타 서류는 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만약 신규 기업법 및 투자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 시 신규 기업법 및 투자법의 적절한 조항으로 해석 될 수 있음.
	기업의무	- 기업법에 따라 회사구조를 재구성해야 함. - 기존 투자승인 조항에 더하여 신규 투자법 및 기업법의 기타 조항을 따라야 함.
	회사조직 개편 필요	- 재등록을 거부한 외국투자기업은 투자법 시행령 발효 후 2년 이내에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회사구조를 개편해야 함. - 상기 시한 이내에는 재등록 거부 기업이라도 정관에 따른 회사 형태(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투자 허가서 수정 필요	- 회사 영업활동 기간 중 재등록을 거부한 외국 투자기업은 기업법 제 170조 2(b)항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경우 투자허가서(투자라이센스)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시행령의 적절한 조항은 다음을 포함해야 함. * 영업활동 분야 및 영업내용 * 영업기간 * 투자인센티브 * 기업 분할, 기업합병, 기업통합 - 투자담당기관은 재등록 거부 외국투자 기업의 투자 허가서(라이센스) 수정요청을 허락 할 수 있음. - 투자 담당기관은 수정된 투자 허가서 첨부 없이 다음 조건 하에서 수정요청을 허락할 수 있음.

재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 허가서 수정 필요	- 적정한 지역에 거래지점, 거래 사무소, 상점, 쇼룸(생산활동 없는) 개설 및 설치 - 투자기업 본사가 위치한 중앙행정 관할지역 내 시 또는 성에서의 사무실 주소 변경, 또는 투자지역 변경 - 투자허가서 변경 권한은 투자등록의 일반조항에 따름.
	투자 허가서 수정 시 필요서류	<기본 필요서류> - 기업의 법적 대표자 날인 투자허가 수정 신청서 - 기업 소유주 또는 기업 소유주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투자허가 수정 결정서 - 투자허가 발급일부터 투자허가 변경 신청일까지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 보고서 <투자허가의 추가 및 보완이 요구될 경우 필요서류> - 상기 서류에 더하여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투자 허가 주요 사안에 대해 신청기업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1. 자본 이전 관련 사안의 경우 * 자본 이전 동의서 * 합작계약서, 협력계약서, 기업정관의 수정 또는 보완사항 * 법적지위, 자본 이전 양수인의 재무상태 (외부인에 대한 자본 이전 시) 2.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지점 설립의 경우 *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지점 설립 내용(내용, 지점운영 규모, 투자자본, 자재소비 등) * 설립지역 해당 성 인민위원회의 설립위치, 토지 임대 등에 대한 의견서 * 생산제품이 제한적이고 제품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허가가 제공된 투자프로젝트에 연관된 정부부처의 의견서

재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투자 허가서 수정 시 필요서류	3. 투자 금액 변경의 경우 * 보완된 경제기술설명서 * 투자금액 조정을 보장하는 재정 조건들 * 추가 소요 기계 및 설비 명단 -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3부의 서류를 제출하며 이중 1부는 원본이어야 함. - 투자승인 당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완비된 변경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투자허가서 변경내용을 통보해야 함.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대상 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등록 시행령은 과거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하기 외국투자법인을 대상으로 적용됨. * Joint Ventures Enterprises * 100% 외국투자법인 * 2003년도 4월 15일자 시행령 번호 38/2003/ND-CP에 의거하여 Foreign Joint Stock Companies로 전환된 Joint Venture Enterprises 및 100% 외국인 투자법인 - 동 시행령은 과거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투자 승인을 받았거나 신규 투자법에 따라 재등록을 완료한 협력계약에 적용됨.
	재등록 시한	- 외국인 투자기업 재등록 시행령 발효 후 2년 이내
	재등록 허가	- 사안별로 심사, 행정당국에 의해 허가
	투자 인센티브 유지	- 투자승인을 득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등록 기업은 신규 투자법 제 112 조 및 투자 승인에 명시된 투자인센티브 수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재등록 기업 형태	- 본 시행령에 의거한 재등록 유형은 다음과 같음. * Joint Venture Enterprise 또는 2인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소유주로 구성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재등록을 해야 함.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재등록 기업 형태	* 1명의 소유주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100% 외국인 투자기업은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1명의 소유주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등록해야 함. * 외국인 Joint Stock Company는 신규 기업법에 의거하여 Joint Stock Company”로 재등록해야 함. - 상기에서 명시된 유형의 재등록 직후 기업은 독자적으로 기업명, 지사, 대표 사무소, 법적 대표자 등을 개명할 수 있음.
	재등록 시 필요서류	- 투자승인서 재발급 신청서 - 회사의 재등록 결정증빙 서류 * Joint Venture Enterprise의 경우 이사회 의결 내용 * 100% 외국인 투자회사는 소유주들의 재등록 결정사실 증빙서류 * 외국인 투자 Joint Stock Company의 경우 주주 연합회의 재등록 결정 사실 증빙서 - 투자 허가서 및 수정된 투자 허가서(공증 필)
	재등록 절차	- 재등록을 희망하는 외국투자회사는 투자담당 기관에 동 시행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등록 서류의 정확성과 진위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사업등록 기관 및 투자 담당기관은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재등록 대상자의 평가 및 투자허가서 발급에 대해 책임을 짐. 만약 투자허가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적절한 사유를 문서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자허가발급 거절 통지문에는 발급 거절 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 요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투자담당 부처는 제출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본 시행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어떠한 서류도 추가로 요청하지 말아야함.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재등록 절차	- 신규 투자확인서는 기 발급된 투자확인서를 대체 하며 사업자등록증 역할을 함.
	재등록 후 기업권한 및 의무	- 투자확인서 발급 후 재등록 및 재전환을 요청했던 외국 투자회사는 법적 존립을 마감하며 재등록 및 재전환된 기업은 기존기업의 법적 권한과 이익을 승계하며 채무 이행 의무 및 노동계약, 기타 재산권을 승계함. - 재등록 기업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가 있음. * 사업자 등록 및 투자 등록 확인서에 맞는 영업 활동 수행 * 투자법 및 기업법에 의거한 책임과 의무 * 기업법의 다양한 기업 형태에 맞춘 회사 구조 개편
	투자 인센티브 발급권한	- 투자인센티브 확인서 발급 권한은 투자등록 관련 일반 조건에 의거함.

작 성 자

◆ 하노이무역관

김영웅 관장

◆ 해외조사팀

신순재 과장